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59회 제2차 정례회

검토보고서

2022. 11. 29.(화)

검 토 안 건	발 의
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	구청장



복지도시위원회

(전문위원 김동원)

검 토 보 고 서

(전문위원 김동원)

1. 안 건 명

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

2. 회부경위

가. 의안번호 : 제22-114호

나. 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다. 제출일자 : 2022. 11. 15.

라. 회부일자 : 2022. 11. 18.

3. 제안이유

노인복지 기금의 목적사업이 일반회계 사업과 유사하여 목적성을 상실하여 일반회계로 통합하여 재정효율성과 투명성을 향상하고자 함

4. 주요내용

가. 마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

※ <u>기금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로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</u> 설치 및 운용된 기금 잔액은 일반회계로 전출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1)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제15조(기금의 통합·폐지)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다. 합의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사항

- 1) 입법예고 : 2022. 10. 6. ~ 10. 26.(20일) (제출된 의견 없음)
- 2) 기획예산과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: 해당 없음
- 3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: 해당 없음
- 4) 여성가족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 : 해당 없음
- 5) 제1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·의결 (2022.11.3.)

6. 검토의견

- 본 조례 폐지안은 2022. 11. 15. 마포 구청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22-114호로 제출되어, 2022. 11.18.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입니다.
- 조례 폐지 사유는 기금의 목적사업이 일반회계 사업과 유사하고 기금조성의 목적성이 상실되고 이자율도 저조하여 일반회계로 통합 운영으로 재정 효율성을 재고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.

※ 노인복지기금 운용에 따른 장·단점

구 분	장점	단점
기금 존속 시	· 이자 활용으로 예산外 사업을 탄력적으로 운용가능 - 단년도 사업으로 필요한 내용 운영 가능	 저금리로 인해 효율적 활용이 어려움 이자內 사업으로 소규모 사업만 가능 기금관리 및 심의 등 행정력 과다
기금 폐지시 (일반호계 편입)	 예산 편성으로 사업의 활성화 도모 장기과제 추진 시 지속성 확보 집행절차 간소화로 효율적 운용 	· 예산內 사업만을 수행하여 비탄력적 - 예산外 필요한 사업 수행 곤란.

○ 본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폐지 조례 안은 기금을 일반회계에 편입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통한 노인 복지향상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고 타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바가 없으므로 본 조례 폐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
7. **기타자료**(비용추계서)

가. 비용추계서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」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12조 제2항 제2호에 해당

3. 미첨부 사유

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

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복지동행국 어르신동행과 김믿음
연 락 처	02-3153-88574

나. 관련 법규

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

- 제15조(기금의 통합、폐지)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의 폐지 및 제정、개정 절차에 따라 이를 폐지하거나 다른 기금과 통합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기금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의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. 〈개정 2015. 7. 24., 2017. 7. 26.〉
- 1. 기금 설치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
- 2. 기금 설치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파단될 경우
- 3. 「지방재정법」에 따른 특별회계와 기금 간 또는 기금 상호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
- 4. 그 밖에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-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금의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15. 7. 24., 2017. 7. 26.〉
 [전문개정 2011. 5. 30.]